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및 공공화 관련 자료

□ 정책방향 : 높은 수준의 사회적 돌봄체계 및 운영기반 마련

1	종사자 처우개선	공공성 기반 확립시 단일임금 즉시 적용
		개인시설에도 적정 수준의 처우개선비 지원
2	주체의 공공성	법인·조합 전환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행정지원
		비영리법인화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3	운영내용 공공성	공공화 운영의 4대 중점분야 지정·관리
		운영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 기능 강화

□ 세부내용

1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적용

○ 적용대상 : 법인·구립,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시설

○ 도입시기 : '20. 7. 1~

※ 코로나19로 인한 승인 절차 지연을 감안, '20. 5월말 기준 법인설립 준비 중인 시설은 설립허가 기준일부터 단일임금 소급 적용

※ '20. 4~5월 실시한 모니터링 대상시설은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이 구비·보완된 시점 이후 적용

○ 추진방향 : 단일임금 단계적 적용 ⇒ '20년 95%, '21년 100%

○ 단일임금 구성원칙

기 본 급

▸ 직급 : 종사자별 직위에 따른 직급기준 체계 마련

- 市 인건비 지급기준의 일정 직급 준용하여 급여액 산정 (경력기간 무관)

직위	급여액	시설별 지원대상	비고(기준직급)
센터장	1호봉(2,146천원) ~ 31호봉(3,924천원)	시설당 1명	4급 상당
생활복지사	1호봉(2,122천원) ~ 31호봉(3,633천원)	아동 10인~29명인 시설 = 1명 아동 30명 이상인 시설 = 2명	5급 상당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복지사 60세

- 상한기준일까지만 보조금 인건비(단일임금 포함) 지급

▸ 경력기준 : 우리동네키움센터 인정대상 경력과 동일 규정

제 수 당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 족 수 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 장 근 로 수 당	규정된 근무 시간외에 연장 근로를 한 종사자 ※시설장 제외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최대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대체휴무 우선원칙
명 절 휴 가 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 액 급 식 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 리 자 수 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단일임금에 따른 임금 지급원칙**

- 경력확인·호봉획정 후 개인별 급여액 산출 (자치구)
  · 시설종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또는 객관적 증명자료(전력조회 결과자료) 등을 통해 확인
- 조정수당은 운영비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 급여처리 준수하되, 보조금교부시 종사자별 개인급여액을 명세서 형태로 고지하여 지급준수
  · 조정수당을 포함한 모든 급여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관리대장에 반영, 원천징수 (개인시설의 모든 급여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관리대장에 반영, 원천징수)
- 시설에서 퇴직적립시 퇴직적립금 관리대장, 퇴직적립금 통장 관리 등
  ▸ 기관부담금은 시에서 조정수당(단일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과 별도로 지급

2 개인시설의 비영리법인화 지원

○ **'22년까지 市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 '21년부터는 다센터·1조합을 유도하되, 조합 신규설립보다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잘 운영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개인의 법인화 유도
- 신규설립은 최소한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패키지 지원

○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규제 개선 (중앙정부 지속 건의)**

- 단,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대 (단일임금 도입시설 적용)

○ 공정하고 개방성이 높은 채용관리

- 시설장 신규채용 시 경력기준 강화 : 경력7년 이상인 자 (市 기준적용)
- 채용절차, 방식의 객관성 담보 기준 마련 : 공개채용 원칙 준수

채용공고(15일 이상)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법인·시설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2곳 이상 사이트	· 위원회 : 3명이내 구성 (센터/법인 자체적으로 구성가능) ※자격·채용기준 심사후 5배수 이상 합격처리	· 위원회 : 3명이상 구성 (1명이상 區 직원참석 또는 위원추천)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평균하여 최고득점자 결정

※ 채용서류(의결서 등)는 자치구 제출. 채용시 친족관계 여부 확인
(시설내 조정수당 대상 종사자가 모두 친족관계로 구성시 신규채용된 직원은 단일임금 미적용)

○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처리

- 모든 사업비는 별도 통장관리,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제고
- 비품·차량관리, 강사비 집행기준 준수 및 대장관리 철저
- 공인회계사를 활용한 회계감사 시행 및 회계업무 지원·컨설팅 등 행정지원

○ 공적 돌봄시설 수준의 높은 복무관리

- 종사자 복무표준안 및 지침마련 : 휴가·조퇴·출장 등 통일된 기준제시
- 종사자 출결관리(복무관리시스템), 시설 내외부 CCTV 설치 지원

※ 복지부 아동 안심알림사업과 연계해 종사자 출퇴근 기록시스템 도입으로 시간외수당 보전

○ 급식비 사용실태 지도점검 강화

- 급식보조금 지출·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안내 (표준화된 집행기준)
- 급식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용양육자 중심의 급식실태 점검, 만족도조사
-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활용한 식자재 유통관리 권장

※ 급식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처분 시 공공급식센터 의무적 사용

○ 법인·구립시설 운영 적정성 검증을 위한 운영점검

- 4~5월중 법인·구립시설 대상 기점검했던 체크리스트 사항에 대해 정기(매년)·수시·진입(신규법인화 기관) 형태의 점검 시행
- 보건복지부 심화평가 결과 등과 단일임금 연계
  - ▸ D급을 받고도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거나',논패스 받을 시 지원배제

참고1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테이블

○ 인건비 지급기준

직급 / 호봉	시설장	생활복지사	비고
1	2,146	2,122	
2	2,171	2,137	
3	2,237	2,153	
4	2,284	2,173	
5	2,346	2,203	
6	2,486	2,231	
7	2,574	2,311	
8	2,647	2,383	
9	2,734	2,468	
10	2,810	2,539	
11	2,906	2,633	
12	2,943	2,674	
13	2,999	2,727	
14	3,045	2,769	
15	3,094	2,817	
16	3,143	2,868	
17	3,206	2,941	
18	3,271	3,001	
19	3,324	3,053	
20	3,373	3,102	
21	3,441	3,167	
22	3,494	3,221	
23	3,543	3,270	
24	3,596	3,323	
25	3,639	3,369	
26	3,697	3,419	
27	3,750	3,438	
28	3,776	3,473	
29	3,811	3,525	
30	3,867	3,575	
31	3,924	3,633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 족 수 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 장 근 로 수 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최대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 절 휴 가 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 액 급 식 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 리 자 수 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참고2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추가)**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2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추가)** 2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27.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추가)** 28.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추가)** 29.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30.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1", "30"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하며 **"「병역법」 제5조 1항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